

● 협회소식

제5차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워크샵

제5차 방사선피폭선량평가 워크샵이 지난 5월6일~ 7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전력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센터(서울, 삼성동소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방사선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국가적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유용성으로 그 연구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사선방호의 기본이 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번 워크샵은 2000년도를 향한 방사선방호기술 도약을 위한 판독기술 방향제시라는 명제하에 우리협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외부피폭선량 판독분야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제도화 될 내부피폭선량평가를 대비하여 국제동향 및 국내제도화 일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의미가 컸다.

방사선구역내 작업종사자 경남지역교육 시행

협회는 지난 5월11일과 12일 양일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기관의 방사선구역내 작업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및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종사자가 작업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부산대학교 인덕기념과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강사로 부산대 정운혁(물리학과 교수), 민병인(인재대 동위원소실 실장), 김덕규(동아대병원 핵의학과 과장)이 수고하였고 171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원자력법시행령증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 제1999 - 32호

원자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4일
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



협회소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한 원자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통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발전용원자로 건설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전검사 대상 및 시기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7조)
- 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합병하는 경우에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32조의2)
- 다.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기술기준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옮김으로써 기술진보에 따른 최신기준의 반영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50조 내지 제101조, 제155조 내지 제164조, 제181조 내지 제191조, 제207조 내지 제219조)
- 라. 마약류 등의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로 하여금 매년 운전원의 약물복용·정신질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비정상적인 운전 가능성을 차단함(안 제106조)
- 마. 방사성동위원소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이동사용·판매하는 자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함(안 제197조 및 제199조의2)
- 바. 방사선기기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절차 및 제작검사기준 등을 정함(안 제200조의3 및 제200조의4)
- 사. 면허증을 훼손 분실한 자에 대한 재교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허가 취소된 자의 면허증 반납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안 제291조 및 제292조)
- 아. 건설·운영중인 발전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폐기시설등의 주변의 위해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대상시설을 정함(안 제297조의8)
- 자.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탐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국 환경방사능감시 업무를 규정함(안 제302조의2)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